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92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제220199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안전감리원 지정·배치(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2

I.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제220199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안전감리원 지정·배치(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 ----- ----- ----- ----- ----- ----- ----- ----- ----- <u>.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안전감을 하게 하여야 한다.</u>
② ~ ⑭ (생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생략) 2. ~ 9. (생략) ③ · ④ (생략)	제11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원을 두지 아니한 자</u> <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2. ~ 9.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안전감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안전감리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9조¹⁾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등의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략)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측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이하 생략)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안전감리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시, 의무적으로 안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별도로 배치할 것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²⁾상 안전관리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고, 인력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철회를 권고³⁾ 받았고,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인 인력 부족으로 건축공사 착공 전 안전감리원 지정 및 배치 시 기간 지연, 과도한 감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85

2)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50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022. 6. 24.)